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1. 13 선고 2019가단2126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의소]

전 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10. 2.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30. 피고에게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어린이집 교육시설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6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C의 근저당권(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4. 11. 14. 접수 제73811호,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59,600,000원)의 실제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위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2017. 4. 30.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3. 30., 5,000,000원, 2017. 4. 8. 10,000,000원, 2017. 4. 19. 48,000,000원, 2017. 6. 20. 17,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나머지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7. 5. 19.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40,000,000원에 전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먼저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9.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라.항과 같은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와 D 사이의 전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D 앞으로 곧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관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D 앞으로 곧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7738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선헤

별지